

변경시행일 : 2012년 9월 11일

투자설명서 변경

(1) 기재 정정 사유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투자설명서 서식 개정
4.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 내용 추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책임운용전문인력	<p><변경 대상 항목> - 제2부 5. 책임운용전문인력<박형렬></p>	<전경대>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p><변경 대상 항목> - 제5부 3. 가. 업무보고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 제5부 3. 나.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p>
3. 투자설명서 서식 개정	<p><변경 대상 항목> - 제5부 2.나. 임의해지<신설></p>	<p>-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p>

4.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	<변경 대상 항목> 7. <신설>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기재 정정 사유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운용전문인력	<변경 대상 항목> - II. 6. 운용전문인력 <박형렬>	<전경대>

집합투자규약

(1) 기재 정정 사유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신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후 생략)</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법 시행령 제216조 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현행과 같음)</p>